

한국과 일본에서의 반헤이트 스피치 운동과 이론에 대한 비교 고찰*

: 차별의 역사적 구조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권명아**

차례

1.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 비교: 혐오/표현, 차별, 역사, 제노사이드
2. 혐오와 표현을 분할하는 효과와 딜레마: 차별 구조가 해석을 다루는 '강도(intensity)'의 문제로
3. 국가주의 도덕의 신성화와 차별의 자연화: 탈식민, 탈냉전, 반차별의 중층성

〈국문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현황과 대응을 비교하고 논의 방식과 대응책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논의는 몇 년간 꽤 확산되었다. '혐오 발화가 무엇인가'라는 개념 정의에 대한 논란 단계는 이제 넘어서 조금은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다.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응과 논의는 '혐오'와 '표현'이라는 두 영역으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여러 난관을 맞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나, 차별, 증오 정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최근 몇 년간 '혐오' 담론이 폭증하였고 헤이트 스피치는 혐오 담론의 일환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결국 법적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혹은 규제 강도 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헤이

* 동아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임.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트 스피치에 대한 이론적 탐색은 혐오에 대한 논의나 버틀러의 해석에 대한 논의, 마사 너스바움의 감정과 법에 대한 논의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헤이트 스피치 연구와 대응은 일본의 식민주의, 차별주의, 배외주의의 역사와 구조, 제도를 탐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이론적, 사회적 대응을 촉구하는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헤이트 스피치 연구는 한편으로는 법적 제재 여부에 대한 논쟁에 기울어져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버틀러, 마사 너스바움 등의 정서와 언어 수행성, 언어실천을 강조하는 이론에 크게 기울어져 있다. 물론 이론적 경향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 실천에 대한 이론적 기울어짐은 차별의 역사적 구조와 그 특이성에 대한 논의와 균형을 이루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 논의는 역사와 구조가 사라진 채 법적 판단과 ‘열린 해석 투쟁’의 영역으로 모호하게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고 있다.

핵심어 : 헤이트 스피치, 혐오담론, 표현의 자유, 식민주의, 차별주의, 배외주의, 한일 헤이트 스피치 비교연구, 차별구조, 국가주의 도덕의 신성화, 차별의 자연화

1.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 비교: 혐오/표현, 차별, 역사, 제노사이드

이 글에서 필자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현황과 대응을 비교하고 논의 방식과 대응책의 차이를 살펴보려 한다. 자본의 전지구화에 따라 발생한 증오 정치의 산물로서 헤이트 스피치는 전지구적인 공통성을 보인다.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법적인 대응이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가능한 이유다. 한편 헤이트 스피치가 발현하고 작동하는 방식은 차별의 역사와 구조에 따라 지역과 국가마다 독특한 차이를 보인다.¹⁾

이 글은 필자가 기존에 진행한 헤이트 스피치 비교 연구의 연장에 있다.

한국의 헤이트 스피치 논의에 대해 논쟁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이 논쟁은 단지 기존 논의를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헤이트 스피치(이하 혐오 발화)에 대응하기 위한 좀 더 진전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현재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논의는 몇 년간 꽤 확산되었다. ‘혐오 발화가 무엇인가’라는 개념 정의에 대한 논란 단계에서 이제는 조금은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혐오 발화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정의 등을 반복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또한 이 글에서 살펴보는 홍성수와 모로오카 야스코의 논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념 설정이나 논의 방식은 자세하게 논하지 않으려 한다. 두 저자의 책 모두 한국과 일본에서 이미 상당한 평가를 받은 책이며, 이 연구에서 두 논자의 저작에 대한 의미와 평가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두 논자의 문제설정을 비교하고 비판적인 논평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각 논자의 논의를 과도하게 상찬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방편은 아니다.²⁾ 일본에서의 논의를 비교하는 것은 ‘혐오’ 담론과 헤이트 스피치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이한 기울어짐을 살펴보기 위한 한 방식이다.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혐오 표현이라는 번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1) 권명아,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혐오 발화/중요 정치 비교역사적 연구』, 『역사문제 연구』, 35호, 2016, 『사건 이후의 인간학』, 『팽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 2015 등을 참조.

2) 이 연구에 대해 아낌없는 비판을 해주신 여러 심사자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대부분의 심사자가 이 글이 홍성수의 논의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질타를 해주었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오래 연구하고 반헤이트 스피치 운동을 계속해온 필자로서는 홍성수의 논의를 폄훼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 논의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홍성수의 책은 2018년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이 책에 대한 호평을 담은 서평도 셀 수 없이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홍성수의 책에 대한 상찬을 동반한 비판을 하는 건 너무 의례적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비판을 위해서도 저작의 긍정적 의미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관례에 어울리는 태도이겠지만, 관례에 어긋나게 독해가 되었다면 모든 것은 필자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있는데, 주로 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축적되면서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먼저 필자는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보다는 혐오 발화라는 표현이나, 필요하다면 헤이트 스피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해왔다.³⁾ 그 이유는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과도하게 ‘표현’의 문제로 그 범위가 정해져버리는 데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오래도록 혐오 표현이 “표현”의 문제로 쟁점화되었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⁴⁾

특히 법적 규제 여부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표현 중심의 논의 단계에서 ‘혐오’로 중점이 급격하게 이동한 단계⁵⁾를 거쳐 현재는 혐오/표현 각각을 강조하는 단계로 이동했다고 보인다. 이 과정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제노사이드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된 증오 정치와 상당히 분리된 광범위한 ‘혐오/표현’의 문제로 설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3) 일본에서 반헤이트 스피치 운동 이론가와 실천가들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여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헤이트 스피치를 일본어로 번역하기보다 영어 그대로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것으로 논의가 모여졌는데, 이런 표기 방식은 ‘헤이트 스피치’가 새롭고 낯선 현상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의 비판적 여론을 끌어 모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모로오카 야스오, 종합토론 발표 요지, 『한일 헤이트 스피치 비교 컨퍼런스』, 2018년 11월 17일.

4) 미류, 『지금 여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차별금지법 কে도에 올린다』, 2018. 발표 자료집, 4-5쪽. 또한 이주영은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간 한국에서 인권과 법에 대한 논의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투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역사를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수의 『말이 칼이 될 때』가 주로 표현의 자유라는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은 개인의 논의 방식의 한계라기보다는 이러한 인권 운동의 역사 속에서 바라 봐야 한다는 지적이며 매우 타당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이주영, 『한일 헤이트 스피치 비교 컨퍼런스』, 2018년 11월 17일. 토론문. 이런 논의를 전제하면서 필자는 반헤이트 스피치 운동과 이론은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서는 이론과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본문에서 홍성수의 논의에 대한 비판은 이런 문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필자의 비판 역시 한 개인의 논의 수준이나 성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서는 반헤이트 스피치 이론의 문제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5) 이에 대해서는 손희정, 『혐오담론 7년』, 『문화과학』 93호, 2018년 봄호.

원론적인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개념 규정에는 차별 표현이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만이 아니라, 증오선동이나 괴롭힘이 포괄된다. 그러나 법적 규제에 대한 실제적 논의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는 여전히 ‘표현’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인다. 법적 논의에서 헤이트 스피치의 개념은 점점 확대되어 광범위한 ‘표현 문제’의 일환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헤이트 스피치가 ‘표현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문제설정은 오히려 협소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논의하러 한다.

물론 법적 규제에 대해서도 법 전문가에 따라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주영의 연구에 따르면 “박경신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차별 및 혐오발언 금지법을 제안했고, 홍성수는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검토하고, 중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기본적으로는 법적 강제가 아닌 차별 시정 기구를 통한 비사법적 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준일은 혐오 표현의 수준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규제(형사·민사·행정적 제재 및 자율적 분쟁 해결 방법)의 방식을 고찰하였다. 김지혜는 혐오 표현 형태 중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차별선동으로 정의하고, 국제법 및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차별선동의 형사적 규제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이주영은 국제인권법적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혐오 표현 규제 논의가 보편적 인권 기준에 터 잡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⁶⁾ 최근에는 법적 규제에 대한 세분화되고 집중적인 논의가 박사논문 형태로 제출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혐오 표현 규제를 헌법적으로 고찰한 이승현의 논문은 흥미롭다.⁷⁾ 이승현은 혐오 표현을 여러 형태로 구체화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 방식을 논의하였다.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응과 논의는 ‘혐오’와 ‘표현’이라는 두 영역으로 분리되어 여러 난관을 맞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나, 차별, 증

6) 이주영, 『혐오 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 논총』, 2015.

7) 이승현, 『혐오 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오 정치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최근 몇 년간 ‘혐오’ 담론이 폭증하였고 헤이트 스피치는 혐오 담론의 일환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논의가 ‘혐오’ 담론의 맥락과 관련된 갈등에 대응하는 방편이 되면서 초점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인터넷이나 미디어, 문학, 예술, 드라마, 영화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된 논의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혐오’ 담론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한편 법적 규제라는 차원에서 혐오 표현을 다루는 논의는 국가별 사례를 통해서 법적 규제의 함의와 한계를 살펴보거나, 어떤 사안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보려는 모로오카 야스코와 홍성수는 모두 법 전문가로서 법적 제재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두 논자를 비교하는 주된 논점은 법적 제재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문제설정의 차이이다.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규제 논의에서 쟁점은 주로 ‘국가가 표현 영역에 개입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의 프레임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 문제적이다. 즉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는 기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존의 논의 방식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지점은 잘 고려되지 못한다. 또 이로 인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여러 조치들(인권 조례, 노동 인권 조례, 청소년 인권 조례,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차별선동 집단의 논리에 대한 대항 논리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데도 한계가 발생한다. 또 일본의 경우 차별을 담은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은 차별 표현이라고 개념화하였다면 헤이트 스피치는 차별표현을 포괄하면서도 더 폭넓은 증오선동과 가두시위, 맞불 집회, 차별선동과 다양한 형태의 차별 행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헤이트 스피치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차별 표현의 함의로 환원되는 경향이 강하다. 표현의 층위를 중심으로 한 법적 규제 논의에서 혐오 표현은 실상 차별 표현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반헤이트 스피치 운동의 이론과 실천은 점점 심각해지는 차별선동과 같은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표현’으로서의 ‘혐오표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국가가 오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해온 경험으로 인해 ‘법’이나 국가 행정력에 의해 개인의 행위, 특히 ‘표현’이 제재되는 것에 트라우마와 강박이 강하다. 이론적으로 헤이트 스피치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기에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표현의 자유’와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는 진행되지만,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표현과 법을 둘러싼 프레임 자체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도 보인다.

2. 혐오와 표현을 분할하는 효과와 딜레마: 차별 구조가 해석을 다루는 ‘강도(intensity)’의 문제로

한국에서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국가별로 비교한 연구는 꽤 축적되어 있다. 모든 연구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대응 못지않게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지만, 막상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축적되지 못했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이 제정되면서 한국과 비교가 되곤 하지만 막상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히려 ‘법’ 제정이 강조되면서 법적 규제에 반대하는 논자들에게는 참고 대상으로 선호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가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혐오 담론 확산의 “역사적 사건”이라고까지 평가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역설적이다.⁸⁾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최근 논의는 혐오 담론의 확산, 특히 여성혐오 담론이 확산하게 된 저간의 사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에서 주요 표적 집단은 재일조선인이고 여러 차별이 절합되는(articulation) 중층 결정 구조에서 인종차별 심급이 지배적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차별의 중층 결정 구조에서 성차별 심급이 지배적이기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논의가 성차별에 대한 논의와 떨어질 수가 없다. 일본에서도 복합 차별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듯이 차별은 이질적인 차별 방식이 결합되면서 여러 양태로 발현된다. 차별이 만들어지고 축적된 역사적 구조에 따라서 차별의 지배적 형식과 절합 방식이 다르다.⁹⁾ 결국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응은 이런 차별의 역사적 구조와 그 차이, 이에 따른 차별 심급들의 절합과 발현의 공통성과 특이성을 규명하고 이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반면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혐오에 대한 논의는 여성혐오의 탈역사적인 ‘원초성’에 보다 치중되어 있다. 남성의 성적 주체화 과정과 성적 욕망, 특히 남성 연대와 여성혐오 구조를 고대에서 현재까지 동일한 양태로 규정한다. 전시 강간은 역사적 파시즘이라는 근대 제국 일본의 역사와 구조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남성 동료 간의 연대감을 높이기 위한” 초역사적인 원초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된다.¹⁰⁾ 다른 한편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논의는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 역사와 파시즘 경험, 청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배외주의나 증오 정치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혐오에 대한 논의가 과잉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8)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여성혐오 담론과의 관련을 통해서 ‘혐오’라는 규정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손희정은 “여성혐오가 드디어 비평 용어로서 그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은 2012년 4월이다. 이즈음 여성혐오 담론사에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진다. 바로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가 번역, 출간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손희정, 앞글. 26쪽.

9)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혐오 발화/증오 정치 비교역사적 연구』, 『역사문제연구』, 35호, 2016.

10) 우에노 치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2, 39쪽.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논의는 기이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 이것이 한국의 헤이트 스피치 담론 구성의 어떤 특이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대응 양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와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¹¹⁾ 여기서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기본적 개념 규정이나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양론이나 제안과 같은 기초적인 논의보다, 헤이트 스피치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문제설정의 차원에서 비교 검토해보려 한다. 특히 책 구성이나 논의 전개 방식에서 유사점이 많은 모로오카 야스코의 『증오하는 입』¹²⁾과 홍성수의 『말이 칼이 될 때』를 비교해보려 한다.

모로오카 야스코와 홍성수는 모두 법 전문가이고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모로오카 야스코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이고 홍성수는 법적 규제보다는 제도적 시정을 주장한다. 두 논자의 차이는 단지 법적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 차이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헤이트 스피치가 왜 문제인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항한다는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헤이트 스피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떤 논의를 만들고 공론화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논점의 차이가 크다.

헤이트 스피치를 어떤 문제로 설정하느냐, 즉 문제설정 자체의 근본적 차이가 매우 깊다. 한국에서도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결국 법적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혹은 규제 강도 논란 등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이론적 탐색은 여성혐오 논의를 바탕으로 한 ‘혐오’ 논의, 버틀러의 언어 수행론을 참조한 논의, 마사너스바움의 감정과 법에 대한 이론을 참조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경우 헤이트 스피치 연구와 대응은 식민주의, 차별주의, 배외주의의

11)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몇편의 선행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자세한 논의는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혐오 발화/증오 정치 비교역사적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12) 모로오카 야스코, 『증오하는 입』, 조승미, 이해진 옮김, 오월의 봄, 2015.

역사와 구조, 제도를 탐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이론적, 사회적 대응을 촉구하는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헤이트 스피치 연구는 한편으로는 법적 제재 여부에 대한 논쟁에 기울어져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버틀러, 마사 너스바움 등 정서와 언어 수행성, 법적 제재보다는 언어실천을 강조하는 이론에 크게 기울어져 있다. 물론 이론적 경향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 실천에 대한 이론적 기울어짐은 차별의 역사적 구조와 그 특이성에 대한 논의와 균형을 이루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 논의는 역사와 구조에 대한 문제설정이 사라지고 법적 판단과 ‘열린 해석 투쟁’의 영역으로 모호하게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 문제설정에서 역사와 구조가 부재하게 되면 차별을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적 실감 속에서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 공론화 하는데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논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강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가짜뉴스를 활용한 차별선동에 휘말려있다. 또 서로가 자신이 받는 차별의 강도가 더 높다며 차별과 혐오의 강도를 비교하고 측정하는 무한 악순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이런 문제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항하는 이론과 실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문제설정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식의 반동적 공격에 대항하면서, 소수자 집단의 차별을 강도에 따라 분류하여 소수자 집단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식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논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논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홍성수의 책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한국 필자의 첫 단행본이고 대중적 호응도 많았으며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중적인 담론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홍성수의 『말이 칼이 될 때』에서 혐오 표현 문제는 여성혐오에 대한 뜨거운 논쟁에서 출발하고 개념 규정 역시 여성혐오 논쟁의 맥락에서 시작된다. 여성혐오와 혐오 표현이 만나는 공통성은 바로 ‘혐오’이다.

사전적 의미로 혐오는 매우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이다. 한국어에서 혐오는 ‘혐오 시설’, ‘혐오 식품’처럼 시설이나 음식을 수식하는 말로 주로 쓰여 왔다. 혐오 표현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번역한 말인데, 영어에서 ‘헤이트’도 극도의 싫음, 역겨움, 적대감을 뜻한다. 헤이트나 혐오나 모두 상당히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혐오 표현에서의 혐오는 이러한 일상적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 여기서 혐오는 그냥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를 뜻한다.¹³⁾

여기서 헤이트 스피치는 헤이트와 스피치로 분할되어서, 먼저 헤이트는 혐오에 대한 통념, 혐오의 관용적인 사용례, 헤이트 스피치에서 ‘혐오’의 의미의 순서로 정의된다. 헤이트 스피치에서 혐오는 통념보다 강한 감정적 싫음이 아닌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로 ‘확대’해서 사용된다고 정의된다. 헤이트 스피치는 역사적인 과시즘, 제국주의, 체노사이드와 결합된 증오 정치와 관련된 차별과 배제의 문제로 설정되지 않고, 혐오의 통상적 사용례보다 강도가 다른 새로운 언어적 사용례로 정의된다. 이런 방식으로 혐오는 한국어의 사용례와 새로운 사용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정되고, 여기에 ‘표현’의 문제가 덧붙여진다. 이런 정의 방식을 따라서 혐오와 표현은 증오 정치와 분리 불가능한 헤이트 스피치가 아니라, 일종의 특정 영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사용례의 하나로서 혐오와 표현으로 분리된다. 혐오가 그간의 통상적 사용례의 의미보다 강도가 강하고 차별의 의미가 부가된 새로운 사용례로 설정된다면, ‘표현’은 전적으로 법리적 용어로서 ‘표현’의 사용례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도 논한 것처럼 이런 정의는 헤이트 스피치보다는 차별 표현에 더 가깝다. 혐오표현과 증오선동을 구별해서 주로 표현의 문제를 다루는 홍상수의 논의는 그런 점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논의라기보다 차별표현에 대한 논의로 보는 것이 더

13)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혐오 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어크로스, 2018년, 24쪽.

정확할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혐오와 표현으로 나눠서 규정하는 방식은 한국의 논의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다소 기이한 현상이다. 예를 들면 모로오카 야스코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장 먼저 “역사적·구조적으로 차별받아 온 피지배 위치에 놓인 소수자에 대한 차별, 폭력, 박해에서 비롯된 언행이라는 점이 혐오발언의 본질”이라고 규정한다. 또 모로오카의 논의에서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는 과시즘에서 비롯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역사의 문제 그 자체와 분리되기 어렵다. (“혐오발언은 사회 전체에 차별이 만연하게끔 만들고 소수자에 대한 폭력, 나아가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초래한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¹⁴⁾

즉 혐오발언은 특정 사회와 지역에서의 “공적·제도적 차별”과 분리 불가능한 관계다. 제일 조선인에 대한 혐오발언은 취직과 주거지 입주에 대한 차별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또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발언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식민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펼쳐온 차별 정책, 배타주의 정책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¹⁵⁾ 따라서 혐오발언에 대응하는 지향점도 분명하다. 즉 “그러므로 혐오발언과 맞서 싸우는 것은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인 동시에 일본이 식민지주의를 강화시켜 다시금 군사 대국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막아내려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⁶⁾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일본의 식민지주의, 일본형 배외주의, 과시즘, 반지성주의에서 비롯된다고 그 차별의 원천이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반면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논의는 법적 규제에 대한 방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그 분명한 차별 구조의 원천에 대한 ‘합의된’ 논의가 부재하다. 대신 혐오에 대한 막연하고 모호한 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혐오 논의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다. 혐오가 초역사적인 원초적 현상으로 규정되면서 헤이트 스피치가 발생하는 차별 구

14) 모로오카 야스코, 앞의 책, 8쪽, 한국어판 서문

15) 모로오카 야스코, 앞의 책, 12쪽.

16) 모로오카 야스코, 앞의 책, 12쪽.

조의 역사적 원천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거의 부재하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다. 이는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논의가 ‘역사’를 다루는 기이한 방식과도 관련된다. 홍성수는 헤이트 스피치에서 역사 문제를 차별 구조를 만드는 역사적 원천으로 다루기보다, 규제 항목의 하나로서 ‘역사 부정죄’라는 항목에 한해서 논한다.

홍성수의 논의에서 헤이트 스피치와 역사의 관계는 차별의 역사적 원천과 지속되고 반복되는 구조의 문제로 구체화되지 않는다. 대신 ‘역사 부정죄’가 법적 제재를 할 만한 정도의 혐오의 강도를 지니는가를 법리적으로 분별하고 제노사이드를 유발할만한 강도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즉 헤이트 스피치와 제노사이드라는 역사적 경험의 문제는 차별의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혐오의 강도와 표현의 강도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다투는 문제로 설정된다. 이런 논의 방식을 통해 차별을 구축하고 재생산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구조는 헤이트 스피치 문제설정에서 분리되거나 배면화 되고, 혐오의 강도와 표현의 강도에 따라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게 적절한지 혹은 과도한지를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해석 문제가 헤이트 스피치 문제설정의 중심에 놓인다.

이런 문제설정은 혐오의 강도와 표현의 강도에 따라 법적 제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되기에, 강도에 따라 차별을 분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역사부정이 제노사이드를 유발할 ‘강도’가 되지 않고, 지역차별은 “구성요건이 상당히 모호한” 이유로 헤이트 스피치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을 철폐하고 변화시키는 방향보다는 법리적 해석을 다투는 문제로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어 나타나는 문제다. 이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하는 홍성수와 모로오카 야스코의 논의의 커다란 차이로도 드러난다.

혐오 발화 대응 방법에 대한 모로오카 야스코의 생각은 다음 문장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혐오발언과 맞서 싸우는 것은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인 동시에 일본이 식민지주의를 강화시켜 다시금 군사 대국으

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막아내려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⁷⁾

반면 홍성수의 대응 방법은 혐오에 대한 대응으로 ‘인류애’를, 표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표현”을 제안한다. 물론 헤이트 스피치 대응을 위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차별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역시 검토하고 있지만, 홍성수가 제안하는 궁극적 대안은 혐오에 대응하는 “인류애”와 표현에 대한 제제가 아닌 “더 많은 표현”이다.

먼저 혐오에 대해서는 마사 너스바움과 제레미 윌드론의 이론을 빌어 “인류애의 정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혐오 표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제레미 윌드론은 공존과 공공선을 이야기한다. 마사 너스바움은 인간을 존중하고 “상상력을 동원해 타인의 삶에 감정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적 태도인 “인류애의 정치”를 말한다.(중략) 혐오 표현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공존의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¹⁸⁾

또한 표현에 대한 법적 개입 대신 더 많은 표현을 대안으로 최종적으로 제시한다.

개입의 불가피성을 얘기했지만 여전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는 없다. 혐오 표현에 “더 많은 표현more speech”과 “더 좋은 사상으로 맞서는 것”이 “최고의 복수”이며, 표현의 자유의 확대야말로 소수자의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단순히 자유주의적 낭만으로 폄하할 수는 없다.(중략) 따라서 혐오 표현에 대한 개입은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표현이 혐오 표현을 격퇴시킬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개입’이다. 즉 “희생자와 그 지지자들에게 혐오 표현행위에 대응하

17) 모로오카 야스코, 앞의 책, 12쪽.

18) 홍성수, 앞의 책, 229쪽.

게 하는 실질적, 제도적, 교육적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자들로 하여금 혐오 표현 행위의 ‘침묵하게 만드는 효과’에 도전하게 하고, 혐오 표현 화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¹⁹⁾

즉 헤이트 스피치 법적 규제에 대한 여러 논의를 비교 검토하고 있지만 홍성수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문제설정에서 혐오와 표현을 분할하고, 각각에 대한 발생 요인, 강도, 대응책을 제시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헤이트 스피치와 역사적인 증오 정치의 관계, 증오 정치가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차별적인 사회 구조는 문제설정 자체에서 배면화 된다. 『말이 칼이 될 때』에서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된 개별 사례와 해석이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막상 한국 사회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발생하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다. 법적 규제 항목에 어떤 차별을 넣어야 하는가(넣을 수 있는가)와 같은 법리적 해석 판단 문제에 집중한 결과 오히려 차별을 분류하고, 차별의 강도를 측정하는 논리로 기울어진다.

『말이 칼이 될 때』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방안은 혐오의 강도나 표현의 강도에 따라 법적 제재 여부를 측정하고, 혐오 표현을 처벌하거나 제재하기보다 ‘더 많은 표현’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말이 칼이 될 때』에서 혐오와 표현은 분할되고, “표현”의 문제는 주로 한국 법에서 논의되어온 ‘표현물’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 역시 기존의 법적인 논의 범위와 방식을 반복한다. 이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심각한 딜레마를 만들어버리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헤이트 스피치 집회’에 대한 잘못된 문제설정이다. 홍성수는 ‘혐오 표현’을 혐오와 표현의 층위로 분할하고, 표현을 법적인 표현물의 범위에 한정하기 때문에 증오선동 집회를 ‘의견 표현’의 문제로 한정하고 오히려 헤이트 스피치 집회를 정당화하는 역설적 귀결에 이른다.

19) 홍성수, 앞의 책, 150-151쪽

2014년부터 일부 보수 개신교 세력들은 퀴어문화축제를 무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는 한편, 퀴어문화축제 장소에 나와 “동성애 반대”, “동성애는 죄악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물리적으로 축제를 방해하기도 했다. 단순히 이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견이 있다면 이른바 ‘맞불시위’를 하면 되지, 굳이 문화 축제 ‘불허’를 요청할 이유는 없다.²⁰⁾

홍성수의 논의는 일차적으로는 2014년 이후 강화된 “반동성애 운동”이 차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너그러운 태도로 위장된” “반동성애 운동”도 차별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홍성수의 논의에 따르면 “반동성애 운동”도 “단순히 이견을 표명하는” “맞불 시위” 같은 형식이나 표현 강도는 ‘허용’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표현의 강도에 따라 어떤 표현은 헤이트 스피치로 간주하고, 어떤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홍성수의 논의 방식의 필연적인 귀결점이기도 하다. ‘맞불 시위’는 혐오의 강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견을 표명하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맞불 시위’는 주로 극우 세력에 의해 민주화를 향한 소수자 운동에 반대하고 민주화에 역행하기 위한 시도를 ‘다양한 입장’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식이다. “맞불 시위”라는 명명은 2003년 노무현 정권 당시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을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연이은 시위에 대해, ‘보수 단체’가 주최한 “파병 찬성 긴급 쉼기 대회”를 보도하면서 이를 “맞불 시위”라고 칭하면서 등장한다.²¹⁾ 또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한창일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 역시 “맞불 시위”로 명명된 바 있다.²²⁾ 노동운동 사상 가장

20) 홍성수, 앞의 책, 129쪽.

21) 이준택 기자, 『파병 ‘저지’, ‘지지’ 맞불 시위』, 『한국일보』, 2003년 3월 29일자.

22) 2004년 3월 27일자 한국일보 사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집회를 “불법적 시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보수단체의 집회를 “맞불집회”로 명명한다. “탄핵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사회단체 간부 4명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이 30일 경찰에 자진 출두

가혹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해야했던 이랜드와 뉴코아의 노조 투쟁에 대해 회사와 사용자 측에 의한 노조 탄압도 “맞불 시위”라는 명명으로 탄압과 폭력의 의미를 지우는 일은 반복되었다.²³⁾ 『이랜드 社측 ‘맞불시위’』라는 제목의 기사는 노조의 점거 농성과 회사 측의 “맞불 시위”를 ‘균형 잡힌 논조’로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비교해서 보도한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보도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인권이나 기본권에 대한 요구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탄압하는 국가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선전

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 체포할 것은 없다는 이유다. 탄핵반대 단체들은 오늘 저녁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공권력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맞불시위를 벌일 예정인 탄핵찬성 보수단체와 충돌할 것이 우려된다. 우리는 국회 탄핵의결이 나온 지 두 주일이나 지난 이제 불법적 시위는 그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촛불 시위 이제 그쳐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 2004년 3월 27일.

- 23)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 노조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김스클럽 강남점을 기습 점거한 가운데 경찰의 공권력 투입이 임박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 매장 입점 상인들과 이랜드 본사 직원들은 노조가 점거 중인 매장 진입을 시도하고, 민주노총을 향의 방문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이랜드 노조의 점거농성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점거농성을 벌이는 노조원들을 강제해산시키기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랜드 노사 관계자가 매장 주변에 많이 모여 있어 투입 시기는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랜드 본사 직원과 입점 상인 등 1000여명은 김스클럽 매장 주변에 모여 이랜드 비정규직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랜드 노조 지지집회 장소 바로 앞에서 1시간가량 맞불시위를 벌이며 노조의 매장 점거를 비난했다. 이들은 노조의 점거농성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지하 매장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어 이들은 이랜드 노조투쟁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날 새벽 김스클럽 매장을 기습 점거한 뒤 철야농성을 벌이는 노조는 경찰력이 투입되면 물러서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혀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권력이 투입되면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회사 측이 외주화 철회만 보장한다면 점거농성을 끝낼 것이고, 다른 쟁점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중양 뉴코아 대표이사는 “노조가 사측에 협상을 제안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매장을 점거했다”며 “노조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매장 점거농성을 풀기 전에는 협상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강구열·조수영 기자, 『이랜드 社측 ‘맞불시위’』, 『세계일보』, 2007년 7월 31일.

기능을 하였다. “맞불시위”라는 ‘중립적인’ 명명을 반복하면서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 요구하는 집단은 ‘과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주장만 하는’ ‘반대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극렬한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동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말 그대로 ‘혐오’는 널리 퍼졌다. 이 시대에 ‘민주화’를 차별표현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일베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서 “시위=민주화”라는 등식이 오래 성립되어 왔고 극우파 시위는 미군정기(1945~1948) 이래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극우파적인 주장이 파시즘이나 극우파가 아닌 ‘하나의 의견’이라고 정당화하는 흐름이 강해졌고, 이는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번성하는 것과도 흐름을 같이 했다. 세월호 유족의 ‘단식 투쟁’에 대한 ‘맞불시위’로 일베가 진행한 ‘폭식 투쟁’은 헤이트 스피치가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거리로 나선 분기점이 되었다. 또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선동은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헤이트 스피치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맞불시위’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허가받은’ 집회로 몇 년 째 이어져오고 있다.

최근 등장한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맞불시위’나 반동성에 ‘맞불 집회’는 단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른바 ‘민주화’에 대한 증오선동이 고조되었던 시기 구축된 헤이트 스피치의 담론 집성체(corpus)의 산물이다. 즉 이는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형성된 증오선동의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맞불 시위”는 “단순히 이견을 표명하는” 표현의 한 형식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특유한 증오선동의 전형적 형식이다.

일본의 경우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이 작용하는 주요 대상은 헤이트 스피치 집회, 배외주의 집회이다. 모로오카 야스코가 지적하고 있듯이 재특회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판결은 차별선동 가두시위를 왜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론을 환기했다. 또 법적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 표현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법에서는

다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등장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헤이트 스피치는 현재의 법 제도로는 다룰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반인간적 폭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차별선동 시위의 심각성 때문이다. 즉 “2013년 10월 7일 교토 지방법원은 세 차례에 걸친 이 차별선동 가두시위가 단순히 불법 행위가 아니라 인종차별철폐 조약에 규정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1220만엔 손해 배상과 학교 반경 200미터 이내에서 가두 시위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²⁴⁾ 일본 뿐 아니라 헤이트 스피치 문제가 나타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차별선동 집회와 증오선동 시위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며 헤이트 스피치가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을 주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맞불 시위는 보수 정권과 미디어, 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지지되고 재생산되었고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효과적인 담론 도구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반인권, 반기본권을 주장하는 맞불 시위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선동과 증오선동의 헤이트 스피치로 전환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증립을 표방한 동성애 찬반토론이 공영 방송에서 시사 토론으로 편성되는 것도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구성된 역사적 특성의 산물이다.

그러나 홍성수는 맞불시위를 혐오의 강도가 높지 않은, 이견을 표명하는 하나의 표현 형식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홍성수의 논의가 헤이트 스피치가 형성되고 재생산된 역사적 원천이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대신 표현에 대한 형식적이고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결국 헤이트 스피치를 문제로 설정할 때 한 사회와 지역에 고유한 차별의 구조와 역사, 그리고 중요 정치가 만들어내는 차별의 공통성과 차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표현의 강도와 혐오의 강도를 측정하는 일은 법적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어쩌면 결정적인

24) 모로오카 야스코, 앞의 책, 25쪽.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차별을 분류하고(지역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은 한국 사회에서 부차적이라거나), 표현의 강도에 따라서 허용 여부를 분류하는(퀴어 퍼레이드 방해는 차별선동이지만 “맞벌시위”는 이견을 표현하는 형식이라는 식의 판단처럼) 형식적이고 분류학적인 논의로 귀결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차별과 혐오의 형식을 분류하는 방식은 오히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판단을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 문제로 환원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법리적 해석의 ‘제한적 권한’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처리해버린다. 현재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논의는 차별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집중되기보다, 법적 처벌의 수위에 대한 논의에 치우쳐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증오선동 세력은 이런 상황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악순환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한국 사회의 차별이 형성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공론화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면서, 반차별 운동이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운동이라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국가주의 도덕의 신성화와 차별의 자연화: 탈식민, 탈냉전, 반차별의 중층성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제국주의와 배외주의의 역사와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이동과 체제 재편이 결합되어 폭발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자본의 전지구화에 따른 인구 이동이 헤이트 스피치의 폭발과 제노사이드가 반복될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화시켰다. 과시즘의 증오 정치가 자본의 전지구화에 따른 세계대공황과 세계대전의 산물이었듯이, 탈냉전 이후, 다시 도래한 자본의 전지구화는 ‘낯익은’ 제노사이드의 망령을 다시 불러왔다. 서구와 유럽, 일본에서는 공통적으로 헤이트 스피치

문제를 신자유주의 시대 파시즘의 재출현 현상으로 해석한다. 이런 인식의 기저에는 사실상 냉전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해석이 자리 잡고 있다. 에티엔 발리바르도 테러로 점철된 최근의 유럽의 상황을 냉전이라는 ‘긴 평화’가 지나고 도래한 ‘새로운 전쟁’의 시대로 규정한 바 있다.²⁵⁾ 그러나 이런 판단은 제한적인데, 비서구의 대부분 지역에서 냉전은 ‘긴 평화’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전과 국지전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많은 비서구 지역에서 세계 대전, 냉전의 긴 평화, 다시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의 전지구화에 따른 ‘새로운 전쟁’의 도래라는 공식은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 비서구의 경험이 특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헤이트 스피치라는 공통의 의제를 통해서 지구적 공통성과 지역적 경험의 차이 모두를 보편적 문제로 설정하고자 함이다.²⁶⁾

한국 사회의 경우 헤이트 스피치는 일본 식민 통치를 통해 이입된 파시즘 정치가, 한국 전쟁, 분단, 냉전을 거치면서 국가주의 ‘도덕’으로 공고화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출현했다.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관습’, ‘도덕’, ‘능력’, ‘미풍양속’, ‘시대통념’ 등의 의미로 전도되어, 자연화 되거나 도덕화 되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 단체별로 추진되던 인권조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행동을 오래 주도해온 증오 행동주의 세력의 모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에는 인천에서, 2017년 2월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가 무산되었다. 극우단체의 집요한 반대가 그 원인이었다. 나라 사랑 국민연합,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구 해병대 전우회 등 11개 극우단체가 제시한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²⁷⁾

25) Etienne Balibar, "In War", *Open Democracy*, 16, 2015

26)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증오 정치/혐오 발화 비교역사적 연구』, 앞글.

27)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수치스러운 몸의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적 원천과 풍속 통제의 자연화』, 『민족문화사연구』, 66호, 2017; 『풍기문란 통제, 입신과 처세의 논리가 되다』, 『주간경향』, 1253호, 2018년 11월 12일, 권명아, 『음란과 혁명: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참조.

우리나라 헌법과 노동삼권법이 잘 만들어져있고 이것으로 근로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노동권보다 경영권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직장이 없는 노동력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민 단체의 실상으로 보아 9~24세 청소년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노동권만 가르치고 계급 투쟁적인 이념을 주입시킨다면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강성노조국가입니다.

기존법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게 경영권보다 노동권을 우선시하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인권법 속에는 부도덕한 동성애나 근친상간, 수간 같은 추악한 것을 보장하려는 법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비정상적인 동성애 등을 정상이라고 교육하게 되고 불결한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 병을 확산시킨 범죄자로 역사가 반드시 심판하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²⁸⁾

극우 단체가 반대하는 ‘기본권’은 인권, 노동권, 특히 청소년 노동권, 인권, 성소수자 인권이다. 인권조례 자체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지만 이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합법적 근거’가 노동권 우위 금지, 청소년 인권 반대, 성소수자 인권 반대이다. 노동권 우위에 대한 반대는 경영권 우선주의로 합법화되고, 청소년 인권 반대는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력’에 따른 ‘오염 가능성’이 제시되고, 성소수자 인권 역시 ‘오염 가능성’을 ‘반대’의 ‘합법적 근거’로 제시한다. 이 몇 줄의 논평에도 한국 사회에 고유한 차별의 역사와 구조적 차원이 중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권에 대한 반대는 한국 전쟁과 냉전 체제하에서 지속된 ‘빨갱이 사냥

28) 『극우단체가 달서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반대한 ‘기막힌’ 이유』, 김규현, 『뉴스민』, 2017년 2월 3일자.

의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빨갱이 사냥의 이데올로기, 문법, 방법론과 풍속통제의 방법론이 무매개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을 취한다. 성소수자 차별이 ‘중복 게이’라는 구호로, 청소년 인권 반대가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이 ‘빨갱이 의식’에 오염되고 ‘에이즈’에 감염된다는 식의 구호로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이다. 일본 식민 통치하에 만들어진 사상통제와 풍속 통제는 거의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헤이트 스피치의 담론 원천이 되고 증오선동 세력의 정당화 도구, 증오 정치의 합법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사상 통제의 문제점은 아주 오래 공론화된데 반해 풍속 통제의 문제는 거의 공론화를 거치지 못하고, 법제 역시 일제 시기 풍속 통제 방식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풍속 통제라는 법적 통제와 규율 방식은 한국 사회 전체에 너무나 만연하고, 또 다양한 법률과 관련 제도에 스며들어버려서 자연화 되고 비가시화 되어 버렸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제노사이드와 증오 정치를 법적으로 정당화해온 법 체계와 법 이념 자체에 대한 비판과 재구축 역시 필요하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이 제정된 맥락에는 관련 운동 단체의 지속적인 실천이 큰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현행법의 한계에 대한 공론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규제 논의는 법적 규제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혹은 법적 규제인가 자율적 시정인가 하는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한국 사회의 법이 과연 헤이트 스피치를 다룰 수 있는 체계와 이념을 갖추고 있는가, 또 현재 한국 사회의 법 체제, 법 이념, 법 전문가들이 그간 증오 정치를 합법화하는 도구가 되었던 법 체제의 한계를 인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변화를 위해서 어떤 법 체제의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논의를 위해서도 차별과 증오 정치가 형성되고 재구축된 한국 사회의 역사적 구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자료

- 『촛불 시위 이제 그쳐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 2004년 3월 27일.
강구열·조수영 기자, 『이랜드 社측 ‘맞불시위’』, 『세계일보』, 2007년 7월 31일.
이준택 기자, 『과병 ‘저지’, ‘지지’ 맞불 시위』, 『한국일보』, 2003년 3월 29일자.

2. 단행본

- 권명아, 『음란과 혁명: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참조.
모로오카 야스코, 조승미·이혜진 역, 『증오하는 입』, 오월의 봄, 2015.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39쪽.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혐오 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어크로스, 2018년

3. 논문

- 권명아, 『수치스러운 몸의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적 원천과 풍속 통제의 자연화』, 『민족문화사연구』 66호, 민족문화사연구소, 2017, 257-288쪽.
권명아,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혐오 발화/증오 정치 비교역사적 연구』, 『역사문제연구』 35호, 역사문제연구소, 2016, 11-45쪽.
권명아, 『풍기문란 통제, 입신과 처세의 논리가 되다』, 『주간경향』 1253호, 2018년 11월 12일, 경향신문, 2018.
미류, 『지금 여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차별금지법 퀘도에 올라다』 2018, 발표 자료집, 4-5쪽.
손희정, 『혐오담론 7년』, 『문화과학』 93호, 문화과학사, 2018년 봄호.
이승현, 『혐오 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이주영, 『혐오 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15, 195-227쪽.
Etienne Balibar, "In War", *Open Democracy*, 16. 2015.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unter-Hate Speech Movement and Theory in Korea and Japan

Kwon, Myoung-a

The paper aims to compare the discussion of 'hate speech' in Korea and Japan. Currently, the debate on hate speech has spread considerably over the years in Korea. The debate over the definition of 'what's 'hate speech' has gone beyond and has entered a phase where a little further discussion is possible. In Korea, however, the discussion of the hate speech is being discussed separately in two areas, 'hate' and 'expression', resulting in a number of problems. Hate speech is often considered a part of hate discourse as there is an explosion of hate discourse in the absence of social debate on discrimination or hate politics. In Korea, various discussions on Hate Speech take place, but in the end, the issue of legal regulations and the opposition to and the severity of regulations will be centered. Theoretical exploration is also focused on discussing the conduct of language, law and emotions. Of course, the problem is not the theory itself that emphasizes language performance or language practic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discussion of language, emotions and laws is not balanced with the discussion of the historical structure and specificity of discrimination.

Key words : hatespeech, historical structure and specificity of discrimination, 'hate' and

'expression', language as performative act, law and emotions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
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